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품대금 연동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4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납품대금 연동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	2
※ 참고자료	10
1.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8.
3. 회부연월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Ⅲ. 검토의견

1. 납품대금 연동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

개정안은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위탁거래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과 동시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u>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u>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① ----- ----- ----- <u>위탁기업이 제21조(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 ----- ----- ----- -----.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1. 제21조(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위탁기업에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는 5천만원 이하, 그 위탁기업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까지에----- ----- ----- -----.

현행법 제2조제13호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1)’이라 정의하고, 제21조제1항제4호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2)하고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4.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1).

이와 같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27조제1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제25조(준수사항)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현행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제도에 관한 약정서 발급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반면, 해당 연동 약정서 발급 이후 실제로 납품대금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1]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내용

-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조사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
 - * **약정서 발급여부**,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
 -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12.23.),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이에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안 제27조제1항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0조제1항제1호 개정),

위탁기업이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소속 임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안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3항 신설)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43조제3항은 ① 안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 ② 그 위탁기업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위탁기업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이미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³⁾.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경우 제40조제5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현행법 제43조제2항제1호와 문언상 중복으로 규정되게 되어, 현행법 제43조제2항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정안 제40조제5항 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43조제2항제1호를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위탁기업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⁴⁾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 제40조제5항은 수탁기업의 자료 제출 및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위탁기업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탁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이 위탁기업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탁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 6788-5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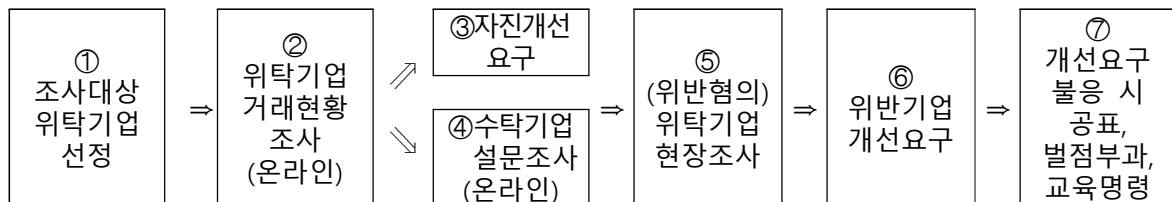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목적)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조사대상) 15천개사 (위탁기업 3천개사, 수탁기업 12천개사)
- (조사내용)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
 -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방식, 결제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 수수료 등 지급 여부 등
 - *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 의무(법 제22조)
 - (준수사항 분야)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금지, 보복행위 금지 등
 - * 약정서 발급(법 제21조), 부당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법 제25조 제1항)
- (조사절차) 위탁기업 선정 및 거래현황 조사 → 수탁기업 설문조사 → (법 위반 혐의) 위탁기업 대상 현장조사 → 개선 요구 등 조치



- (조사결과) 자진개선, 개선요구 및 공표 등 처분 조치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자진 개선	개선 요구	계
납품대금	기업수	740	4	744	743	4	747	697	9	706	591	22	613
	미지급 금액	19,279	1,202	20,481	10,388	4,088	14,476	9,891	1,023	10,914	11,178	4,051	0
준수사항 미이행	기업수	-	-	4	-	2(1)	5(1)	-	6(1)	14(1)	-	22	42(2)

* ()는 납품대금 분야 및 기타 준수사항(약정서 발급 등) 분야 중복 위반기업수